DBpia

‘낙태’는 죄였던 적이 없다
– 오늘의 낙태죄 폐지 운동

저자
(Authors)

박종주

출처
(Source)

여/성이론 , (37), 2017.12, 321-330 (10 pages)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 (37), 2017.12, 321-330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도서출판여이연

THE CENTER FOR WOMEN'S CULTURE&THEOR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401598

APA Style

박종주 (2017). ‘낙태’는 죄였던 적이 없다. 여/성이론, (37), 321-330.

이용정보
(Accessed)

연세대학교
165.***.14.104
2018/10/22 15: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리포트

‘낙태’는 죄였던 적이 없다: 오늘의 낙태죄 폐지 운동

박종주 | 성과 재생산 포럼

적어도 이만큼 본격적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70-80년대에도 낙태죄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위 시민사회 전반이 관심을 갖는 이슈로서 낙태죄 폐지가 이만큼 이야기되는 것은 처음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2010년대 초에 여러 단체의 연대체로 결성되었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활동은 낙태죄 폐지 운동의 역사에서 특기할 만하지만, 당시의 요구가 형법상 낙태죄의 전면 폐지로 나아가기보다는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낙태죄 폐지 운동은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질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일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아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문화된 법으로 취급받았던 형법 제2편 제27장 ‘낙태의 죄’가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10년에 벌어진 소위 ‘고발 정국’을 통해서였다. 당시 몇 명의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근절”을 위해 낙태 시술 병원 네 곳을 고발하면서 잊혀져 있었던 낙태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낙태죄로 여성 파트너를 고발하는 남성이 등장하는 등의 사건이 이어졌고, 같은 시기 보건복지가족부(당시 장관 전재희)가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10/22 15:59(KST)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고 시술 비용 역시 큰 폭으로 치솟았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나왔다. 2010년 낙태 시술로 고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 조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재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2010헌바402. 당시 8명으로 구성되었던 헌재에서 이강국 재판장을 비롯해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김종대, 민형기,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 등 4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렇게 정리되는 듯했던 상황이 다시 불거진 것은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당시 장관 정진엽)에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면서였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제출된 이 개정령안은 모자보건법상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성범죄, 약물오남용 등과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회는 이 개정안을 비판하며 '낙태 시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하자). (이렇게 단순화해 칭할 수는 없겠지만) 여성계에서는 당시 폴란드에서 집권 우파 정당의 낙태 전면 금지법에 항의하며 열린 '검은 시위'와 공명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11월에 발표된 최종 개정안에서는 낙태 시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가 철회되었지만 이렇게 불붙은 낙태죄 폐지 운동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10/22 15:59(KST)

낙태죄 폐지 요구, 운동이 되다

보건복지부의 개정령안 발표, 폴란드의 검은 시위 등이 촉매제가 되어 한국 각지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강남역10번출구(현 페미몬스터즈), 불꽃페미액션 등 '강남역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결성된 페미니스트 그룹들, 혹은 워마드 등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이 중심이 된 BWAVE(Black Wave)와 같은 소규모 신생 모임들이 주도한 이 흐름에 한국여성연합을 비롯한 기존 여성운동 단체들까지도 가세해 따로 혹은 같이 집회를 열었다(이 중 BWAVE는 올해까지도 대략 한 달 간격으로 지속적인 독자적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필자가 속한 성과재생산포럼은 2016년 10월 17일 70여 단체와 3천7백여 개인이 연서명한 기자회견문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를 발표했으며, 같은 시기 한국여성민우회 역시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명>을 진행했다.

여러 개인, 단체들이 곳곳에서 움직인 만큼 구호나 요구는 다양했다. 기존의 논의 구도—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를 보여주는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에서부터 "싸튀충(사정만 하고 도망가는 남성)을 처벌하라"까지 다양한 구호들이 거리를 울렸다. 우생학적 관점을 답습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실효성 있는 성교육 시행, 결혼 여부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에 구애받지 않는 성적 권리 보장,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 등 '낙태죄'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는 지점들에 대한 비판과 요구들도 제시되었다.

이렇게 다변화된 운동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물론 양적 확대의 차원도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10/22 15:59(KST)

있지만, 질적인 확대, 즉 담론의 폭이 넓어진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요구들이 보여주듯, 시민사회의 담론 속에서 낙태는 더 이상 임신한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역동을 드러내는 문제가 된 것이다.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등 임신을 금지당하거나 아예 낙태 혹은 불임을 강요당하는, '여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묶을 수 없는 여러 주체들이 낙태죄를 둘러싼 담론의 장에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여성학 학술대회나 법학 학술대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낙태죄 폐지의 문제는 보다 넓은 논의의 장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제9회 성소수자 인권포럼(2017.02.24 - 26)에서는 성과재생산포럼의 주관으로 <검은 색 속 무지개 : 성소수자와 재생산권>이라는 세션이 마련되었다. 연령, 직업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의 모임인 페미광장은 <낙/태>라는 제목의 포럼(2017.05.25)을 열어 여러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런 논의의 장에서 낙태죄 폐지는 더 이상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한 점으로 수렴되는 이슈가 아니었으며, 재생산 권리, 나아가 재생산 정의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했다.

'낙태'는 죄였던 적이 없다

이처럼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낙태죄 관련 논의는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허용한계라는 법조문 뒤에 숨어 있던 임신·출산·낙태를 둘러싼 역동을 시민사회 전반에 알리는 데로 나아갔다.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낙태'는 죄였던 적이 없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상 낙태죄가 처벌을 통해 통제하려 한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10/22 15:59(KST)

것이 실은 낙태 자체가 아니라는, 다시 말해 그것이 보호하고자 한 것이 '태아의 생명권'이 아니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변화하는 기조 속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 온 정부의 인구 정책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낙태죄가 제정된 1953년은 국가 개발과 북한과의 경쟁 등을 위해 많은 인구가 요구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60-70년대 들어 산아제한이 정책 기조가 되면서 정부는 불임 수술은 물론이고 낙태까지 장려하기에 이른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유명한 표어들과 함께 시행된 이 소위 '가족계획' 정책 속에서 태아의 생명이 고려된 적은 없었고,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행해진 숱한 여아 낙태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 보호하고자 했던 것은 태아의 생명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인구'였던 것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좀 더 노골적이다. 이 조항은 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임신 이외에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을 낙태 허용 사유로 삼고 있다(이것이 무려 1항에 해당한다). '건강하지 않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아이가 출산될 수 있는 임신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국가의 인구 정책은 인구를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통제하려 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센인에게 정부 주도로 낙태와 '단종 수술'이 가해진 것은 그 극단적인 한 예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문제시되면서 한편으로는 출산 지원 정책이 펼쳐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낙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사문화시켰던 낙태죄가 인구 정책의 필요에 따라 부활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가가 처벌한 것은 낙태가 아니라 '질 좋은 인구 생산에 이바지하지 않는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10/22 15:59(KST)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통제된 것은 바로 여성의 섹슈얼리티였다. "세 살 터울 셋만 낳고 35세 단산하자"와 같은 60년대의 산아제한 표어부터 지역별 가임여성 숫자를 공개한 지난해 행정자치부(당시 장관 홍윤식)의 '대한민국 출산 지도'까지가 보여주듯 국가의 인구 정책에 있어 여성의 몸은 관리의 대상이었을 뿐, 섹슈얼리티는 물론이고 건강에 있어서조차 자신의 권리를 가진 독립적인 주체는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논의의 틀을 전환하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대립시켜 왔던 기존의 구도를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대립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와 생명이다. 생명권이 단순히 태외로 배출되어서도 목숨을 유지할 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낙태라는 여성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아니 애초에 삶이 삶으로서 유지될 조건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다.

그런 구도에서 낙태죄 폐지 운동은 여성의 선택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와 어떻게 아이를 가질 것인지,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한, 특히 억압적인 성적 규범을 혁파하고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가 통제하고 유도하는 가짜 선택지 하나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국가 자체에 대항하는 권리로서의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지난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 보장을 위한 국제 행동의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10/22 15:59(KST)

날(Global Day of Action for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이었다. 이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발족식이 열렸다. "모두를 위한"이라는 모임의 이름, 그리고 이날 등장한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표어는 위에서 요약한 그간의 논의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일각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모두"의 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위 '여성문제'를 가린다며 낙태죄 폐지는 어디까지나 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재삼 강조하건대 낙태죄 폐지는 더 이상 (단일한 것으로— 비장애인, 성인, 시스젠더 등으로 상정되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장애여성, 청소년, HIV감염인, 성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임신·출산·낙태를 둘러싼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동행동은 발족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렇게 선언했다.

>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임신중단에 대한 합법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 우리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처벌 대신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1]

1) 본 인용과 328쪽의 인용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2017년 9월 28일자 기자회견문의 일부이다. 전문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문]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2017년 9월 29일,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19441 (검색일. 2017.12.03)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10/22 15:59(KST)

낙태죄 폐지 요구는 단순히 처벌 조항 하나를 없애라는 요구가 아니다. 실질적인 선택이, 출산 전후의 삶이 가능하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며 그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여기에는 임신하는 여성의 건강권이나 경제적 권리 등은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성소수자가 시민으로서 살아갈 권리, 우리 모두가 성적 억압이나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낙태죄 폐지는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것이며, 낙태죄 폐지 운동은 모두를 위한 고민을 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발족 기자회견문 말미의 다음과 같은 요구안은 이와 같은 지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낙태죄 폐지로 체제와 맞서기

낙태죄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앞서 보았듯 변화하는 정책 기조는 물론이고 역시 종종 변화하는 성적 규범, 그리고 갈수록 세를 늘리며 성적인 것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짧은 글로 다 다룰 수 없는 복잡한 역동이 얽히고설킨 문제다. 이런 역동들을 이해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확장하고 이에 반해 행해지는 폭력과 차별, 억압을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10/22 15:59(KST)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쩌면 우리는 조금은 늦게 그 물결에 올라탄 셈이다.

때로는 출산을, 때로는 피임을 강요받는 가임여성 일반은 물론이고,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해 생식 능력 제거를 강요받는 트랜스젠더, 성별 지정 수술 과정에서 재생산 능력을 잃기도 하는 인터섹스, 가족이나 시설로부터 불임 시술을 강요받는 장애인, 섹슈얼리티 전반을 억압당하는 청소년, 성관계를 금지당하는 HIV 감염인, 입양을 금지당하는 동성커플 등 다양한 존재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되찾는 길의 출발점에, 대표적인 성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다.

우리는 많은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 왔지만, 사태는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누구나가 '건강한 생명'을 원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때 장애인이나 질병을 가진 이의 몸은 어떤 생명이 되는가?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건강이라는 가치 뒤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정상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장애를 재생산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유되어야 하는가와 같이 여전히 새로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고민들은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여러 규범을 의심하는 데에서 시작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 끝에는 결국– 체제 내에서의 어떤 선택지 확보나 작은 변화가 아니라– 체제 자체를 의심하고 전복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낙태죄 폐지는 체제를 약간 개선하는 일, 체제 내에서 숨통을 틔우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체제에 맞서는 일이며 또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 낙태죄 폐지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역동들이 우리 뒤에서 체제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10/22 15:59(KST)

아마 그 의심과 전복의 한 출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기

이 원고를 송고한 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간단히 덧붙인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되었다. 10월 30일 자로 마감된 이 청원에는 23만여 명이 서명했는데,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한 중복 서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한 숫자이다.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11월 30일 전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형법 269조 1항(여성의 낙태)과 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해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유남석 신임 재판관 등 최근 청문회를 통해 부분 합법화 입장을 밝힌 재판관들을 포함해 다수가 형법상 낙태죄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청와대 청원을 언급하며 정의당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국회에서 또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정세와 맞물리며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1월 9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형법상 낙태죄 폐지,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및 성교육 강화, 실질적인 성적 권리 보장, 미프진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10/22 15:59(KST)